

## 1. 개정이유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 승객용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2.10.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승강구 개폐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좌측면에 승강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오작동 방지를 위한 승강구 개폐 오작동 방지 장치 및 내부 장치 설치기준 등 승합자동차 좌측면의 승강구 설치 규정 마련(안 별표2의 제25호의3)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 2의 제25호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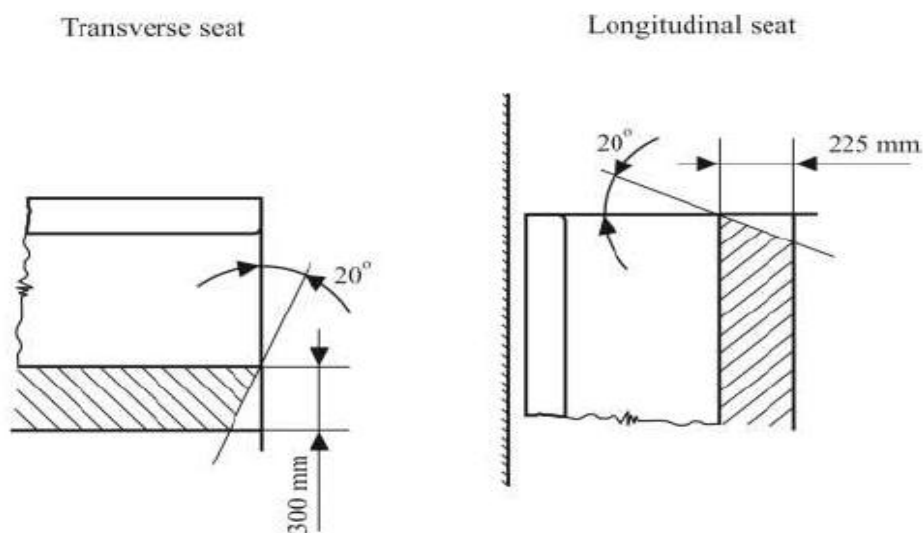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25의3.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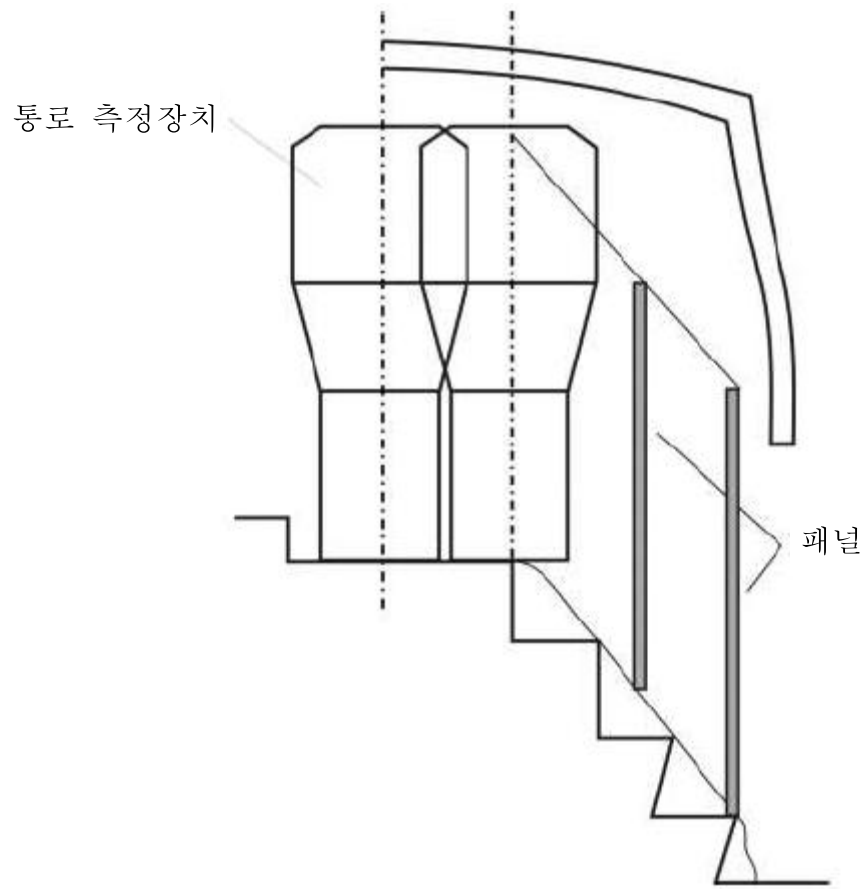
- 25의3.1. 적용범위  
본 규정은 승차정원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수인호송용, 경력수송용, 구급용,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등은 제외한다.)의 승강구에 대한 일반 규정 및 세부 측정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승강구에 적용한다.
  
- 25의3.2. 측정 조건
  - 25의3.2.1. 자동차는 공차상태로 하고 직진상태로 수평한 수평면(이하 “기준면”이라 한다)에 놓여진 상태로 한다.
  - 25의3.2.2. 타이어의 공기압력은 보통의 주행에 필요한 표준공기압(압력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간값, 표준공기압이 없는 경우에는 제작자가 제시한 공기압력)으로 한다.
  - 25의3.2.3. 측정단위는 밀리미터로 한다.
  
- 25의3.3. 일반 규정
  - 25의3.3.1. 승무원 착석을 위하여 설치 한 하나 이상의 접이식 좌석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승강구 접근 통과가 방해 될 수 있다.
    - 25의3.3.1.1. 해당 좌석이 승무원의 착석만을 위한 좌석임을 명백하게 지시하는 내용이 해당 자동차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 25의3.3.1.2. 좌석 미 사용시 자동적으로 접히는 구조로서 25의5.4.2.1. 내지 25의5.4.2.4.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25의3.3.1.3. 승강구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탈출장치의 하나가 아닌 경우
    - 25의3.3.1.4. 좌석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접혀지거나 퍼질때 좌석의 어떤 부분도 운전자 좌석을 가장 최후단 위치로 놓았을 때, 그것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과 반대편 실외후사경의 중심을 지나는 수직면보다 앞에 있지 않은 경우
  - 25의3.3.2. 승강구 부근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림 25의3-1과 같이 전·후 방향을 향한 좌석의 경우 눌리지 않은 좌석 쿠션의 상단 높이를 기준으로 전방 300 mm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옆면을 보는 좌석의 경우 225 mm 까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25의3.4. 측정방법
- 25의3.4.1. 승강구 설치 거리  
 승객공간이 1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승합자동차에 승강구를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 만족해야 하는 설치 거리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만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승강구 측정 장치가 동시에 2개가 통과할 수 있는 규격의 승강구의 경우 가장 먼곳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 25의3.4.1.1. 굴절자동차로서 다른 승객 공간의 2개의 승강구가 연결 상태의 전체 승객 공간의 40% 이상의 거리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 될 경우
- 25의3.4.1.2. 이층대형승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양 측면에 설치되는 경우
- 25의3.4.2. 승강구 접근성
- 25의3.4.2.1. 승강구가 설치된 측면 벽으로부터 안쪽 공간에서 안전기준 별표5의30에서 규정된 측정장치 1 또는 2가 자유롭게 통과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25의3.4.2.2. 측정장치는 승강구 첫 계단과 접하는 위치의 출발점으로부터 이동될 때 승강구와 평행을 유지해야 하며, 승객의 이동방향과 동일한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 25의3.4.2.3. 측정장치의 중심선이 시작점으로부터 300 mm 거리를 가로지르고, 계단 또는 차실 바닥의 표면에 있을 때, 그 위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 25의3.4.2.4. 통로 간격을 시험하기 위한 안전기준 별표5의29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로 측정장치는 통로에서 시작되어 승객이 차량을 나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원통의 중심선이 가장 높은 계단의 윗단면을 포함하는 수직면에 도달할 때까지 또는 상부 원통을 접하는 면이 측정장치에 도달할 때까지 어느것이든지 먼저인 것까지 이동되며, 그 위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 25의3.4.2.5. 25의5.4.2.4에서 규정한 위치의 원통과 25의5.4.2.3에서 규정한 위치의 측정장치 사이는 그림 25의3-2에서 보여지는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 공간은 수직 판넬과 원통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판넬은 원통의 접점으로 부터 움직여서 그것의 외면이 측정장치 내면에 접할때까지 이동되어야 한다.

- 25의3.5. 좌측면 승강구의 설치 규정
- 25의3.5.1. 안전기준 별표 5의30 제2호가목3) 단서에 따라 오작동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활용되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란 25의3.5.1.1과 25의3.5.1.2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 25의3.5.1.1. 25의3.5.1.1.1부터 25의3.5.1.1.3까지의 장치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정류장의 방향을 인식하고 반대 방향 승강구 개폐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 25의3.5.1.1.1.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류장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
- 25의3.5.1.1.2. 통신장치 등을 활용하여 정류장 정보를 받아 정류장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
- 25의3.5.1.1.3. 중앙관제센터와 차량 간 통신을 통해 정류장 방향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
- 25의3.5.1.2. 자동차 내부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25의3.5.1.2.1부터 25의3.5.1.2.3까지 모두 만족할 것
- 25의3.5.1.2.1.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측 승강구의 개방 스위치는 좌측에, 우측 승강구의 개방 스위치는 우측에 설치할 것
- 25의3.5.1.2.2. 점멸등, 계기판넬 등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정류장 방향에 맞게 문이 열리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25의3.5.1.2.3. 승강구가 개방될 때 점멸하는 작동등을 승강구 주위에 설치 할 것. 이 경우 작동등은 버스 내부의 어느 위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림 25의3-1 >



< 그림 25의3-2 >